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

1. 조종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항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제2호에 따른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마.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른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음주 상태에서 비행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는 행위

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행위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그 외의 지역 :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2. 통제관 및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이·착륙 지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나. 전파방해 그 밖에 외부의 영향으로 센서 오작동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라.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헬기 등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일공역 상에서의 비행

3. 비행 전 안전관리

가. 무인비행장치는 2인 1조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무인비행장치 반경 15미터 이내에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조종하여야 하며, 재난현장에서 긴급히 비행 할 경우에는 주변인에게 통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잠재적 위험요인을 상시 확인하고 주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안전관리

가. 비행지점 주변에 장애물(전선, 통신케이블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층건물 사이, 절벽, 산골짜기 등 돌풍이나 상승기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기상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산악이나 내수면에서 운용 시에는 주변 공기밀도 또는 와류로 인한 양력의 차이에 주의하여 운용한다.

라. 산악지형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용한다.

바. 위성항법장치 신호 수신이 불안정한 경우, 수신이 원활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린 후 비행한다.

사. 동일 장소에서 2대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전파간섭이나 혼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행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금속 구조물 위나 강한 자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지자기 센서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비행을 피한다.

자. 조종자의 비행경험과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등을 기록하고 운용자 상호 간 공유하여야 한다.

5. 기타 주의사항

가. 무인비행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나. 여름철에는 과열로 인한 기체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차량 안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겨울철 영하의 기상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르므로 운용 중 전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리튬배터리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방전, 과충전, 과열 등의 상황으로부터 배터리를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